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95호

『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4월 1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함.

나. 시설물 위탁 계약기간 만료시점 도래에 따라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여 문화재 시설 위탁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

하지 않은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5조, 제6조 등)

나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상을 정의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(안 제4조제1항, 제4조제2항)

다. 위탁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hisman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6.25사변시”를 “6.25사변 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민간단체”를 “법인·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민간단체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”를 “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·운영을 재위탁 하지 못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탁관리의취소)”를 “(위탁관리의 취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탁관리자가”를 “수탁기관이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)”를 “(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)”로 하고, “수탁관리자는”을 “수탁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수탁관리자가”를 “수탁기관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탁관리자는”을 “수탁기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익년도”를 “다음해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수탁관리자에게”를 “수탁기관에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설치) <u>6.25사변시</u> 호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둔다.	제1조(설치) <u>6.25사변 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위탁관리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념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<u>민간단체</u> 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	제4조(위탁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인·단체</u>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관리를 위탁받은 <u>민간단체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</u> 는 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.	② ----- ----- ---- <u>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③ <u>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·운영을 재위탁 하지 못한다.</u>
제5조(<u>위탁관리의 취소</u>) 시장은 <u>수탁관리자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.	제5조(<u>위탁관리의 취소</u>) ----- <u>수탁기관이</u>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 ~ 5. (생략) 제6조(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)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. 제7조(손해배상) 수탁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념관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제8조(사용허가) ① 수탁관리자는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제2항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비에 충당하고 년도별 결산서를 <u>익년도</u>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9조(운영비 보조) 시장은 기념관	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6조(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) 수탁기관은 ----- ----- -----. 제7조(손해배상) 수탁기관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8조(사용허가) ① 수탁기관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다음해 ----- ----- -----. 제9조(운영비 보조) -----

현행	개정안
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관리에 <u>소요되는</u>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수 <u>탁기관에</u> -----.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0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 -----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- 제2조(정의) - 제9조(협약체결 등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지방자치법]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[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9조 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임.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위원회 신 현 환 의원